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1. 관련

- 가.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5894호, '21.11.26.)
- 나.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3호, '24.1.3.)
- 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70호, '24.4.25.)
- 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818호, '24.4.29.)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 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정방법 주요내용 >

구분	기존	변경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좌동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종료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에 따라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산정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산정 종료
코로나19 검사	정액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산정 * 누680가 다중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적용기간	○ '24. 5. 1. 진료분부터 별도안내시 까지 적용	

붙임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
험공단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
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
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
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오소정

행정사무관

박소영

보험급여과장

전결 2024. 4. 30.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184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6

팩스번호 044-202-3934

/ osjung98@korea.kr

/ 대한민국 공개